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월간 RI NEWS

# 12

1997 제12호

1997년12월호 제12호 발행인:고창순 편집: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주소: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12 전화:02)566-1092(대) FAX:566-1094 인쇄:성문사 비매품

## '98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통신교육생 모집

### 1. 목 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방사선취급, 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RI 일반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해 면허시험을 대비하기 위함.

### 2. 대상자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기관의 종사자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자(이공계대학 4학년 포함)

### 3. 모집인원 : 약 220 명

### 4. 교육기간 : 1998년 3월~11월 (9개월)

### 5. 교육과목 및 담당지도교수

교육과목	담당교수	소 속
원자력기초이론(물리학)	서 두 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관리실
원자력기초이론(화학, 생물)	김 재 록	한국원자력연구소 동위원소실
방사선취급기술	이 재 기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방사선장해방어	서 경 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원자력관계법령	권 석 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6. 교육방법

- 가. 교육과목의 지도는 각 과목별 담당교수가 한다.
- 나. 과목별 교육내용 및 문제(과제물)는 담당 지도교수가 작성한다.
- 다. 교재(과제물포함)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에 우송한다.

(단, 1회분 교재는 3월 15일 우송한다.)

- 라. 수강생은 매회 과제물 답안을 작성하여 매달 말일까지 협회에 송부한다.
- 마. 실험실습은 교육기간중 조편성하여 각조 별로 3일간(1일 6시간) 본 협회에서 실시한다.
- 바. 9개월의 통신교육이 완료된 후 수강생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켜 총정리교육 및 수료시험을 실시한다.
- 사. 수료시험탈락자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 아.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지도교수와 의 서면질의 응답 또는 전언통신 등을 통하여 통신교육의 효과를 거양한다.

### 7. 실험실습교육

실험실습교육은 통신교육 기간중 (대략 7월-9월에 수강생이 편리한 일자를 선택하여 3일간(1일 6시간)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정기간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협회가 일정을 조정한다.

8. 수강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 장소

- 가. 교부 : RE이용기관 및 수강희망자
- 나. 접수기간 : 1998. 1. 12(월)~2. 13(금)
- 다. 접수장소 : 협회 교육협력팀

9. 수강료 및 납부방법

- 가. 수강료 : 1인당 350,000원
- 나. 납부기한 : '98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10. 수료자 선정 방법

- 가. 통신교육 수료시험 50점과 실험실습 참석 40점, 과제물제출 1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이 중 60점 이상인 자.
- 나. 실험실습 및 수료시험 불참시는 통신교육 탈락자로 간주한다.  
단, 당해년도 수료시험에 건강상 또는 업무로 인한 출장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년도 1회에 한하여 수료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97년도 RI관련 면허시험 합격자 실무교육**

RI협회는 원자력법 제95조 제1항의 단서 규정 및 과학기술처고시 제 97-10호(1997.10.9)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관련 면허시험합격자의 실무교육 지정 위탁기관으로 RI관련 면허필기시험 합격자는 원자력법에 의거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음내용을 참고하여 '97년 12월 31일(수)까지 협회에 FAX나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일정

과 정 명	교 육 일 자	교 육 장 소
감독자과정	'98. 1. 22(목) - 23(금)	RI 협회(이론·실습)
특수과정	'98. 2. 2(월) 2. 3(화)	RI협회(이론) 서울대병원(실습)

2. 원자력법에 의하여 RI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 ① 8세 미만의 자
- ②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원자력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교육신청방법

- ① 방사성동위원소관련 면허시험합격자는 실무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97년 12월

31일(수)까지 우편이나 FAX로 협회 교육협력팀에 신청할 것. 신원조회 관계상 가능하시면 빨리 수강신청하시기 바라며 우편은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FAX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 ② 원자력법 제92조(결격사유), 학력 및 경력 결격사유자는 실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음.

4. 수강료

- ① 수강료납부 : 수강신청 마감일('97. 12. 31(수))까지 납부  
가. 수 강 료 : 50,000원/명  
나. 납부방법 : RI협회 경리과에 직접 납부 및 온라인 송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일자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